

## 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달라지는 사항

### □ 개정 사유

- '25년 사업추진 및 운영실태 점검 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합리적·효율적 사업 추진 도모

### □ 주요 개정사항

#### ○ 공통사항

- 사업장-접수처 간 거리제한 완화(직선거리 30km→60km 이내 지역산림조합)
- 재무제표 제출 대상 확대(금융기관 총부채가 15억원→10억원 이상인 개인)
- 협회분(전문임업인기반조성, 조경수 생산) 용자심의회 실시 기준 마련
- 임야매입자금 사업계획(매입물건) 변경 시 통일된 처리 절차 규정
- 회수 사유 및 미정산에 대한 시정 조치 통보 기준 마련(1개월 단위, 총 2회)
- 임야주택매입자금 법인 관련 거래 제한 강화, 사전유지한도 확대(최대 3~5천만원)
- 임야매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의 형질변경 제한 강화
- 감점사항(지속가능성 및 자금마련 가능성) 신설

#### 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

- 장기수 사업 대상 밀원식물(목본) 수종 확대(「밀원식물의 범위 고시」)
- 전문교육기관 교육 이수 기준 강화(12시간→20시간 이상)

#### ○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

- 귀산촌인 임업 외 겸업 허용
- 사업대상자 확대(세대주+세대원)

#### ○ 목재이용활성화 지원

- 이용·가공시설자금 추가 지원 시 국산재 원목 연간 사용량 기준 완화(8~6천m<sup>3</sup>이상)

### □ 세부 변경사항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<b>제1편 일반사항</b>			
<b>제4장. 산림사업종합자금 공통사항</b>			
<b>&lt; 주요 확인사항 &gt;</b>			
	① 이 사업은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·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용자사업입니다.	① 이 사업은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임업인 등에게 저리의 대출을 실행하고, 금융기관에 이차차액을 정부예산으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.	○ 사업 설명 구체화
	④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<신설>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	④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(대출취급기관의 이차손실)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	○ 사업 설명 구체화
<b>I. 사업개요</b>			
2. 근거법령	○ <신설>	○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(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532호)	○ 근거 규정 보완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2. 지원제의 대상	○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 -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5억원 이상인 개인	○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자 -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	○ 연체율 관리 강화
<b>III.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</b>			
1. 사업 신청단계	○ 사업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 신청이 원칙으로 하되,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지역 산림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 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이 소재한 시·군의 연결 시군 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	○ 사업신청은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에 신청이 원칙으로 하되,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지역 산림조합장의 판단에 따라 접수할 수 있음 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이 소재한 시·군의 연결 시군 - 대출 신청한 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직선거리 6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	○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접수처 거리 기준 확대
2. 사업자 선정단계	○ 2차 심사 : 용자심의회 - 산림조합은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자에 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용자심의회 구성	○ 2차 심사 : 용자심의회 - 산림조합은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신청자에 대하여 산림조합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용자심의회 구성	○ 협회분 사업자 선정 방식 개선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<p>* '전문임업인기본 조성', '산양삼 생산', '조경수생산' 사업의 협회분 우선순위자의 경우, 용자심의회 생략 가능</p> <p>* &lt;신설&gt;</p>	<p>* '보조수반용자' 사업의 경우 용자심의회 생략 가능</p> <p>* 협회는 중앙회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체 용자심의회를 구성하여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우선 순위자에 대하여 [참고8-2 산림사업총합자금 심시기준]에 따라 심의</p>	
	<p>* &lt;신설&gt;</p>	<p>* '해외산림자원개발' 자금은 「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 용자심의회 운영규정」에 따라 구성</p>	<p>○ 별도 운영 근거 명시</p>
	<p>○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(신고)서를 해당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</p> <p>- &lt;신설&gt;</p>	<p>○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(신고)서를 해당 대출 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</p> <p>- 임야매입(전문임업인기본 조성,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), 주택구입 자금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)의 경우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용자심의 확정(완료)된 물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선정권자가 현장심사 재실시 및 변경 승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자금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 예정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함</p>	<p>○ 통일된 업무 처리 절차 마련</p>
3. 대출 실행단계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예산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하여 사업별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후선정자를 사업자로 선정가능</p> <p>- 임야매입, 주택신축, 사립휴양 시설조성(조성, 보완에 한함) 등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</p> <p>- &lt;신설&gt;</p>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예산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포기로 간주하여 사업별 지원자격요건에 따라 후선정자를 사업자로 선정가능</p> <p>- 임야매입, 주택신축, 사립휴양 시설조성(조성, 보완에 한함) 등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</p> <p>-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하며,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</p>	<p>○ 위치 이동 (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)</p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<p>○ &lt;신설&gt;</p>	<p>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(대출마감일)까지 대출</p>	<p>○ 사업자 의무사항 병행 기입</p>
	<p>※ <b>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</b></p> <p>② 보증비용</p> <p>* 대상자에 따라 임업인 80 ~ 85%, 임업후계자 90%, 귀산촌인 90 ~ 95%이나, 사전·사후대출, 시설·운영자금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</p>	<p>※ <b>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</b></p> <p>② 보증비용</p> <p>* 대상자에 따라 임업인 80 ~ 85%, 임업후계자 90~95%, 귀산촌인 85 ~ 95%이나, 사전·사후대출, 시설·운영자금 등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용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</p>	
4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 실시</p> <p>-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, 장래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등 당해 연도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초 사업자에게 사업자 변경 통보 및 대출금 회수</p>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 실시여부 및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·점검 실시</p> <p>- 사업자가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산림조합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등에는 대출금 회수</p>	<p>○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과 같이 문구 수정</p>
	<p>*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전에 대상자에게 2회 이상 대출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하며,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</p>	<p>* &lt;삭제&gt;</p>	<p>○ 위치 이동 (3. 대출 실행단계)</p>
	<p>* &lt;신설&gt;</p>	<p>* 산림조합은 시정 조치 통보(1개월 단위, 총 2회)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회수 조치</p>	<p>○ 회수 사유에 대한 시정 조치 통보 기준 마련</p>
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로 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</p> <p>*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&lt;신설&gt;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용자금은 회수 조치</p>	<p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로 부터 받은 사업실적 증빙서류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최종 정산 확정하여야 함</p> <p>* 정산이 부적정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 통보(1개월 단위, 총 2회)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부적정한 용자금은 회수 조치</p>	<p>○ 미정산에 대한 시정 조치 통보 기준 마련</p>
<b>제2편 세부사업별 집행지침</b>			
<b>제1장. 숲가꾸기 및 임도시설(산림경영기반조성)</b>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5. 사용용도 및 범위(신설)	<p>○ &lt;신설&gt;</p>	<p>○ 풀베기, 덩굴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솎아베기, 가지치기, 선목, 천연림 보육·개량, 산물 수집 등 숲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</p>	<p>○ 사용용도 및 범위 명시</p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<b>제2장. 전문입업인기반조성</b>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1. 사업대상자	○ 독립가개인 및 법인, 입업후계자(개인) 또는 신지식농업인(개인 및 법인, 입업분야)[참고2][참고3]	○ 독립가개인 및 법인, 입업후계자(개인) 또는 신지식농업인<<삭제>> 입업분야[참고2][참고3]	○ 법령 개정 내용 반영
2. 지원자격 및 요건	○ 전문입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(산림교육원 포함)에서 운영하는 입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이수한 자  * 산림청 누리집> 행정정보> 알림정보> 알립니다 "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"에 명시된 교육과 <u>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누리집&gt; 학습지원 "당해연도 입업후계자 선발자격 충족 대상 교육 과정 안내"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</u>  - 사업대상자 외의 법인사업자 * 개인, 입업분야 개인사업자, 법인독립가, <u>법인신지식농업인(입업분야)은</u> 대출 가능  - <신설>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(단,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) * <신설>	○ 전문입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(산림교육원 포함)에서 운영하는 입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20시간 이상(기간 내 합산 가능) 이수한 자  * 산림청 누리집> 행정정보> 알림정보> 알립니다 "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"에 명시된 교육과 <u>산림교육원 누리집&gt; 알림마당&gt; 공지사항 "당해연도 입업후계자 교육 관련 인정 과정 안내"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</u>  - 사업대상자 외의 법인사업자 * 개인, 입업분야 개인사업자, 법인독립가<<삭제>>는 대출 가능  - 당해년도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(단,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) * ③ 25년 협회 회원이 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, '26년 비협회분 예산 배정 가능	○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준 상향  ○ 경로 수정  ○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○ 현행 운영 내용을 규정에 반영
4. 사업용도 및 범위	○ 장기수 사업 - 장기수숙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, 목재수확을 위한 사업비 및 임야매입·임차자금 * 태양광 설치 <신설> 및 기계장비 구입 불가  * 장기수사업 대상 수종 : 조림·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[별표2] 조림권장수종 및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의 목본식물	○ 장기수 사업 - 장기수숙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, 목재수확을 위한 사업비 및 임야매입·임차자금 * 태양광 설치 관련 비용 및 기계장비 구입 불가  * 장기수사업 대상 수종 : 조림·설계·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[별표2] 조림권장수종 및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제2호, 제3호의 밀원식물(목본)	○ 문안 정비  ○ 사업 관련 규정 내용 반영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○ 산림휴양시설 조성  <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> ○ <b>숲경영체험림</b>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따른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'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'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- <신설>	○ 산림휴양시설 조성  <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> ○ <b>숲경영체험림</b>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에 따른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'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'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-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'입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' 1. 입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로서 「입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입업후계자로 선발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독립가로 선정된 자일 것 2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상의 산림(사용·수익하고 있는 산림을 포함한다)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을 것	
	○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- 종자·종묘, 임산물 생산·재배를 위한 시설·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·재배·유통·가공·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(임야매입비·임차보증금 지원 가능) * 태양광 설치 <신설> 불가	○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- 종자·종묘, 임산물 생산·재배를 위한 시설·기계장비 및 비료 등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·재배·유통·가공·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(임야매입비·임차보증금 지원 가능) * 태양광 설치 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	○ 문안 정비
	※ <b>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</b> 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·자매) 간의 거래 <신설>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사업신청일 기준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·속·형제·자매) <신설>이 소유 <신설>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	※ <b>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</b> 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·자매) 간의 거래, <u>법인과 법인 구성원</u> 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사업신청일 기준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·비·속·형제·자매), <u>사업대상자가 운영하는 법인</u> 이 소유(공유, 합유, 총유 등 포함)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	○ 문안 정비  ○ 법인 관련 거래 제한 강화 및 문안 정비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<b>Ⅲ. 사업추진체계</b>			
2. 사업자 선정 및 대출 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 (견적서, 계약서, 검인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산림조합에 제출</li> <li>시설-임야 매입 사전용자한도 : 세부사업별(장기수, 임도, 산림 휴양시설, 단기산림소득지원)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%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 (견적서, 계약서, 검인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산림조합에 제출</li> <li>시설-임야 매입 사전용자한도 : 세부사업별(장기수, 임도, 산림 휴양시설, 단기산림소득지원) 5천만원 범위 내(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% 이내)에서 계약금, 선급금 등에 필요한 소요 금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문안 정비, 사전용자 한도 확대</li> </ul>
3.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임업인 협회 배분 비율</li> <li>사업별 소요자금의 최대 60%는 관련 협회 정회원, 나머지는 (100%-정회원 배정 비율) 비회원에게 배정. 단,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</li> <li>* 관련 협회 : 한국산림경영인 협회(독립가), 한국임업후계자 협회(임업후계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 협회 배분 비율</li> <li>사업별 소요자금의 최대 60%는 관련 협회 정회원, 나머지는 (100%-정회원 배정 비율) 비회원에게 배정. 단,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</li> <li>* 관련 협회 : 한국산림경영인 협회(독립가), 한국전문임업인 협회(임업후계자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회 명칭 변경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 선정 절차</li> <li>2) 협 회 :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(당해연도 2월말까지)</li> <li>-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역산림 조합으로 예산을 배정한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, 미대출자는 취소, 후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</li> <li>* 7월 1일 이후 배정된 예산은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 회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자 선정 절차</li> <li>2) 협 회 :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(당해연도 2월말까지)</li> <li>-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지역산림 조합으로 예산을 배정한 이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, 미대출자는 취소, 후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</li> <li>* 8월 1일 이후 배정된 예산은 당해연도 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 회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출 실행 기한(5개월) 반영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협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하며, 우선순위자 명단 제출 시 교육이수 수료증 등 지원자격 요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협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, 용자 심의회를 통해 「참고8-2」 전문 임업인 기반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자 명단 작성(명단 제출 시 심사자료, 교육이수 수료증 등 지원자격 요건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회분 우선순위자의 사업성 검토 기준 마련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) 협회 :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-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) 협회 :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후신청자 우선순위 선정-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명칭 통일</li> </ul>
	- <신설>	- 기 예산 배정된 우선순위자가 기간 만료, 포기 등의 사유로 예산 회수된 경우 재선정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협회분 운영 개선</li> </ul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4. 정산 및 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입한 임야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, 매각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및 적의조치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구입한 임야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, 매각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현장 확인 실시 및 적의조치</li> <li>* 임업 외 사업을 목적으로 일부 면적 형질 변경이 반복(2회 초과)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 전액 회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야매입자금 운영 개선 (정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의 임업 외 사업 활용 제한)</li> </ul>
<b>제3장. 산림휴양시설조성</b>			
<b>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5. 사용용도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설차운영에 소요되는 자금</li> <li>- 시설 설치,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(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제외)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림휴양시설 조성보완설차운영에 소요되는 자금</li> <li>- 시설 설치,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(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제외)</li> <li>* 시설의 설치는 사업별 관련 법령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한 시설에 한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설치 가능 시설 명시</li> </ul>
<b>Ⅲ. 사업추진체계</b>			
1. 사업 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신설&gt;</li> <li>- &lt;신설&gt;</li> <li>-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준비서류</li> <li>-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대출신청자료 등</li> <li>- 확인서류 : 지자체 인허가 서류, 사업비 산출근거(설계서, 견적서 등) 또는 사업추진실적(준공도·서, 세금계산서 등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준비서류 명시</li> </ul>
<b>제4장. 해외산림자원개발</b>			
<b>Ⅱ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4. 사용용도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산물가공시설</li> <li>- 부지조성, 기계설비 구입·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,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임산물가공시설</li> <li>- 부지조성, 기계설비 구입·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,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</li> <li>* 단, 신규 생산시설 및 공장 신축에 대한 지원은 불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용용도 명확화</li> </ul>
<b>Ⅲ. 사업추진체계</b>			
3. 대출 실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출시기</li> <li>-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: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립 중 고무나무, 임산물가공시설(매수 포함), 해외 조립지 매수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출시기</li> <li>- 자부담 집행 후 사전대출 :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립 중 고무나무, 임산물가공시설(매수 포함), 해외 조립지 매수</li> <li>* 자부담 집행 실적은 해외 송금 영수증 및 공증받은 현지 영수증 제출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자부담 집행 증빙자료 규정</li> </ul>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								
<b>제5장.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</b>								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								
1. 사업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촌(참고5)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</li> <li>- &lt;신설&gt;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산촌(참고5)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,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</li> <li>- (공통)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</li> <li>* 부부의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대상자 확대</li> </ul>								
2. 지원자격 및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내용</li> <li>- 창업자금 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임산물생산자금</td> <td>임야매입자금</td> </tr> <tr> <td>3,700만원 미만</td> <td>3,700만원 미만</td> </tr> </table>	임산물생산자금	임야매입자금	3,700만원 미만	3,700만원 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내용</li> <li>- 창업자금 타산업 분야 연소득 제한</li> </ul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임산물생산자금</td> <td>임야매입자금</td> </tr> <tr> <td>&lt;삭제&gt;</td> <td>&lt;삭제&gt;</td> </tr> </table>	임산물생산자금	임야매입자금	<삭제>	<삭제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산업 분야 소득제한 완화</li> </ul>
임산물생산자금	임야매입자금										
3,700만원 미만	3,700만원 미만										
임산물생산자금	임야매입자금										
<삭제>	<삭제>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내용</li> <li>- 창업자금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 말소사실 제출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자격 및 요건 주요내용</li> <li>- 창업자금 퇴직 또는 사업자 등록 이전 말소사실 제출</li> <li>* 단,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 말소사실 서류를 취업(창업) 신고서로 대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겸업 금지 완화</li> </ul>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이주기한) 신청일 기준 산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이주기한) 신청일 기준 산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사업 신청일 전에 &lt;삭제&gt; 산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상자 확대에 따른 문안 정비</li> </ul>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기타사항)</li> <li>-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기타사항)</li> <li>- 대출금 수령 후 용자기간(15년) 동안은 사업장소에 거주하여야 하며, 산림조합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(임야, 주택 등) 매각, 사업포기(대출 미실행), 타지역 이탈 시에는 대출금 회수, 연체 이자 부과, 제재부가금 부과, 형사 고발, 농림사업자금 지원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관련 주요 내용 재명시</li> </ul>								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제외 대상</li> <li>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&lt;신설&gt;,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) 및 제80조(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)의 규정에 저축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원제외 대상</li> <li>-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제78조(보조금의 부정수급), 제79조(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) 및 제80조(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및 지원제한 행정처분)의 규정에 저축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통사항 재명시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&lt;신설&gt;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&lt;신설&gt; 전업적 직업(&lt;신설&gt;)을 가진 자</li> <li>* 농업 인정범위 : ① 임업(농업 포함), ② 농업 겸업, ③ 수산업 겸업</li> <li>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</li> <li>* 대출금 신청 전까지 퇴직할 경우 대출금 신청 가능</li> <li>* 다만, 산촌지역 주소지에서 출퇴근하며 1개월간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간로자는 지역산림조합장의 확인(별지 제8호 서식)을 받아 신청 가능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기간(15년) 중 임업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업적 직업(사업자 등록 포함)을 가진 자</li> <li>* 농업 인정범위 : ① 임업(농업 포함), ② 농업 겸업, ③ 수산업 겸업</li> <li>* &lt;삭제&gt;</li> <li>* &lt;삭제&gt;</li> <li>*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장에게 취업(창업)신고서 (별지 제8호 서식)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 등록 가능(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겸업 금지 완화에 따른 처리 기준 마련</li> </ul>
	<p>&lt;신설&gt;</p>	<p>&lt;임업활동 증빙&gt;</p> <p>※ ①~③ 중 하나만 제출확인되면 인정</p> <p>① 영농사실 확인서(별지 제9호 서식)</p> <p>② 임업을 통해 임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또는 비료, 종자, 임업기계장비 등 120만원 이상 구입실적</p> <p>*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림산림조합의 증빙 자료만 인정</p> <p>③ 귀산촌인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임야(필지) 관련 직불금 수령 내역</p> <p>*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 확인 필요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산림조합은 임업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(1개월 단위, 총 2회)하여야 하며,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업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	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4. 사용용도 및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산물 생산·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</li> <li>- 임산물(목재 포함)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·임차보증, 재료 구입,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보증, 생산 체험장 설치,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산물 생산·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</li> <li>- 임산물(목재 포함) 생산·재배·이용·가공·유통·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서 임야 매입·임차보증, 재료 구입, 시설의 설치 및 기계·장비 구입·임차보증, 생산 체험장 설치,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</li> <li>* 태양광 설치 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</li> </ul>	○ 타 사업과 같이 기준 정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 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</li> <li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 간의 거래&lt;신설&gt;는 지원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&lt;신설&gt;이 소유&lt;신설&gt;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 활성화 사업) 제한사항</li> <li>③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 간의 거래, <u>법인</u>과 <u>법인 구성원</u> 간의 거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</li> <li>⑥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, <u>사업 대상자가 운영하는 법인</u>이 소유(공유, 합유, 총유 등 포함)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○ 법인 관련 거래 제한 강화 및 문안 정비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 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</li> <li>④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 계획을 <u>인가</u> 받아야 함</li> <li>* 1년 이내에 &lt;신설&gt; 산림경영 계획 인가서 &lt;신설&gt;를 해당 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미제출 시 해당자금 회수 조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야매입·임차자금 지원(임야거래 활성화 사업) 유의사항</li> <li>④ 임야 매입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산림경영 계획 수립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함</li> <li>* 1년 이내에 해당 임야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와 <u>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</u>를 해당지역 산림조합장에게 미제출 시 해당자금 회수 조치</li> </ul>	○ 지원자격 및 요건 반영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주택구입·건축(신·증·개축·재축·리모델링) 시 제한사항</li> <li>⑥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&lt;신설&gt;이 소유&lt;신설&gt;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주택구입·건축(신·증·개축·재축·리모델링) 시 제한사항</li> <li>⑥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 또는 가족(배우자, 동일세대,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·형제·자매), <u>사업대상자가 운영하는 법인</u>이 소유(공유, 합유, 총유 등 포함)한 이력이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	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<b>Ⅲ. 사업추진체계</b>			
3. 대출 실행 및 대출 시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(견적서, 계약서, 검인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산림조합에 제출</li> <li>- 주택·시설·임야 매입 사전용자 한도 : 세부사업별(창업, 주택, 국산목조주택신축) 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10% 이내 또는 3천만원 범위 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(견적서, 계약서, 검인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)를 산림조합에 제출</li> <li>- 주택·시설·임야 매입 사전용자 한도 : 세부사업별(창업, 주택, 국산목조주택신축) 최대 5천만원 범위 내(대출 가능 금액의 최대 70% 이내)에서 계약금, 선금금 등에 필요한 소요 금액</li> </ul>	○ 문안 정비, 사전용자 한도 확대
4. 정산 및 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</li> <li>- 용자기간(15년) 이전에 사업장(주소지)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</li> <li>* &lt;신설&gt;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림조합은 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및 조치</li> <li>- 용자기간(15년) 이전에 사업장(주소지)을 이탈 또는 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</li> <li>* 단, 용자기간 중이라도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사업확장 등을 위해 타 귀산촌 지역으로 주소 <u>이탈(이전)하고자</u> 경우에는 <u>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예외 가능</u></li> </ul>	○ 사업장 이탈 기준 완화
	- <신설>	- 사업기간(15년) 중 임업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전업적 직업(사업자 등록 포함)을 가진 자	
	* <신설>	* 농업 인정범위 : ① 임업(농업 포함), ② 농업 겸업, ③ 수산업 겸업	
	* <신설>	* 다만,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산림조합 장에게 취업(창업)신고서 (별지 제8호 서식)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 등록 가능(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)	
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&lt;임업활동 증빙&gt;</li> <li>※ ①~③ 중 하나만 제출확인되면 인정</li> <li>① 영농사실 확인서(별지 제9호 서식)</li> <li>② 임업을 통해 임산물을 수확·판매한 실적 또는 비료, 종자, 임업기계장비 등 120만원 이상 구입실적</li> <li>*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협산림조합의 증빙 자료만 인정</li> <li>③ 귀산촌인정업자금을 지원받은 임야(별지) 관련 직불금 수령 내역</li> <li>*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 확인 필요</li> </ul>	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* <신설>	* 산림조합은 임업활동 증빙자료 제출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 대상자에게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요청(1개월 단위, 총 2회)하여야 하며, 2회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업활동을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금 회수	
	-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- 귀산촌인 창업과 무관한 상근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 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적장가입자인 자. 다만, 국민연금 등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대출취급기관장(지역 산림조합장)의 확인(별지 제8호 서식)을 받아 취업 가능 * 1년에 최대 3개월(월단위)까지 대출취급기관장(지역 산림조합장)의 사전 승인(별지 제9호 서식)을 얻어 농외근로(월 근로 시간) 가능 * 대상자는 취업후 근로계약서(일용근로는 생략 가능) 사본을 산림조합에 제출(14일 이내)	- <삭제> - <삭제> * <삭제> * <삭제> * <삭제>	○ 검업 금지 완화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정비
	- 구입한 임야·주택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, 매각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* <신설>	- 구입한 임야·주택 등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, 매각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* 임업 외 사업을 목적으로 일부 면적 형질 변경이 반복(2회 초과)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 전액 회수	○ 임야매입자금 운영 개선(정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의 임업 외 사업 활용 제한)
<b>제6장. 단기산림소득지원</b>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7-나. 조경수 생산 5. 협회분의 사업자 선정	○ 사업자 선정 절차 2) 협회 :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(당해연도 2월말까지) ☞ 산림청, 중앙회 · <신설>	○ 사업자 선정 절차 2) 협회 :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 및 명단 제출(당해연도 2월말까지) ☞ 산림청, 중앙회 · 우선순위에 선정 지원 기준으로 해당지역에서만 신청하여야 함(단, 연결된 시도(광역지자체)는 가능	○ 현행 운영 내용을 규정에 반영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
	· 협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함	· 협회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되, 용자 심의회를 통해 「참고8-2」 단기산림소득지원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총점이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우선순위명 명단 작성(명단 제출 시 심사자료를 함께 제출)	○ 협회분 우선순위자의 사업성 검토 기준 마련
	4) 협회 :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대상자 우선순위 선정·제출	4) 협회 : 미대출자 해당 금액에 대한 후신청자 우선순위 선정·제출	○ 명칭 통일
<b>제8장. 목재이용활성화 지원</b>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9-가. 목재이용·가공시설 4. 지원대상 및 형태	*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8,000㎡ 이상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[2025년(1년간) 한시적으로 6,000㎡ 이상 사용자에게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]	* 목재가공업체의 경우 국산재 원목을 연간 6,000㎡ 이상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<삭제>	○ 추가 지원 기준 완화
<b>제10장. 임업인경영자금</b>			
<b>II. 사업시행 주요내용</b>			
2. 지원자격 및 요건	○ (지원한도)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를 참고하되, 실제 임업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-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는 소요 경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	○ (지원한도) 2천만원 이내 - 임업규모당 소요경영비를 참고하되, 실제 임업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는 소요경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	○ 현행 내용에 따라 문안 정비
	- 임업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* 소요경영비는 임업규모 확인 서류(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원부, 임대차계약확인서, 영농확인서(현지 출장확인, 출장복명서 등)) 등에 의해 적정 소요경영비(설계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경영비 산출내역 등) 심사	- 임업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* 소요경영비는 임업규모 확인 서류(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원부, 임대차계약확인서, 영농사실 확인서(별지 제9호 서식) 등)에 의해 적정 소요경영비(설계서, 견적서, 세금계산서, 간이영수증, 경영비 산출내역 등) 심사	○ 서식 변경 내용 반영
	○ <신설> - <신설> - <신설>	○ (지원조건) - 대출기간 : 2년 - 대출금리 : 고정금리(연 2.5%) 또는 변동금리(6개월 변동주기)	○ 현행 운영 내용을 규정에 반영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																						
<b>제3편 제출서류 및 서식</b>																									
	<별지 제8호 서식> 취업 확인서	<별지 제8호 서식> 취업(창업) 신고서	○ 귀산촌인 검업 허용에 따른 서식 변경																						
	<별지 제9호 서식> 입업인 농외활동 신청(승인)서	<별지 제9호 서식> 영농사실 확인서	○ 귀산촌인 검업 허용에 따른 서식 변경																						
<b>제4편 참고자료</b>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8. 가점사항(자격증 등 기타사항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</td> </tr> <tr> <td>B : 3개</td> </tr> <tr> <td>C : 2개</td> </tr> <tr> <td>D : 1개</td> </tr> <tr> <td>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세대주 연령 49세 이하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	B : 3개	C : 2개	D : 1개	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세대주 연령 49세 이하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8. 가점사항(자격증 등 기타사항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</td> </tr> <tr> <td>B : 3개</td> </tr> <tr> <td>C : 2개</td> </tr> <tr> <td>D : 1개</td> </tr> <tr> <td>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(삭제)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	B : 3개	C : 2개	D : 1개	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(삭제)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	○ 중복되는 가점 항목 삭제 (만 40세 미만 청년 우대)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3개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2개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1개																									
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세대주 연령 49세 이하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에 해당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3개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2개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1개																									
* 입업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/ 입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경우 / 친환경임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/ 임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/ 대학생창업 연수 과정 이수자 / 입업관련 대학 산촌정책과정 이수자 / 귀산촌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/ GAP 인증을 받은 경우 / (삭제) / 조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, 청장년 실업자 / 여성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/ 만 40세 미만 청년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9. &lt;신설&gt;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</td> </tr> <tr> <td>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</td> </tr> <tr> <td>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</td> </tr> <tr> <td>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9. 감점사항(지속가능성 및 자금 마련가능성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</td> </tr> <tr> <td>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</td> </tr> <tr> <td>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</td> </tr> <tr> <td>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○ 심사 기준 보완(부실을 관리 및 사업 실행 가능성 제고 등)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9. &lt;신설&gt;</p>	<p>[참고 8-1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자 심사기준 9. 감점사항(지속가능성 및 자금 마련가능성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6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B : 4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C : 24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D : 12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</td> </tr> <tr> <td>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60시간 이상	B : 40시간 이상	C : 24시간 이상	D : 12시간 이상	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 교육이수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기준 정비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6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4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24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12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
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		
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8,000㎡ 이상(10점)</td> </tr> <tr> <td>B : 5,000㎡ 이상(8점)</td> </tr> <tr> <td>C : 3,000㎡ 이상(6점)</td> </tr> <tr> <td>D : 3,000㎡ 미만(4점)</td> </tr> <tr> <td>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8,000㎡ 이상(10점)	B : 5,000㎡ 이상(8점)	C : 3,000㎡ 이상(6점)	D : 3,000㎡ 미만(4점)	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6,000㎡ 이상(10점)</td> </tr> <tr> <td>B : 5,000㎡ 이상(8점)</td> </tr> <tr> <td>C : 3,000㎡ 이상(6점)</td> </tr> <tr> <td>D : 3,000㎡ 미만(4점)</td> </tr> <tr> <td>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6,000㎡ 이상(10점)	B : 5,000㎡ 이상(8점)	C : 3,000㎡ 이상(6점)	D : 3,000㎡ 미만(4점)	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○ 심사기준 완화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8,000㎡ 이상(10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5,000㎡ 이상(8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3,000㎡ 이상(6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3,000㎡ 미만(4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6,000㎡ 이상(10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5,000㎡ 이상(8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3,000㎡ 이상(6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D : 3,000㎡ 미만(4점)																									
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16] 조경수 지원 수종</p>	<p>[참고 16] 조경수 지원 수종</p>	○ 2025년 임업관측월보(조경수) 반영																						

사업명	현행	변경	변경사유														
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0. &lt;신설&gt;</p>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0. 감점사항(지속가능성 및 자금 마련가능성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</td> </tr> <tr> <td>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</td> </tr> <tr> <td>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</td> </tr> <tr> <td>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</td> </tr> <tr> <td>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</td> </tr> <tr> <td>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○ 심사 기준 보완(부실을 관리 및 사업 실행 가능성 제고 등)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
A : 아래 항목이 모두 부족 (근거자료 미제출 포함)																	
B : 아래 항목 중 4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
C :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
D :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 부족																	
▶ 사업계획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에 비취볼 때 원리금 상환 계획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																	
▶ 용자-자체조달 등 사업자금 마련 계획의 현실성																	
▶ 연체-부도 없이 신용이 양호한지																	
▶ 예금-용자금 및 담보를 현황이 적정한지																	
▶ 농신보 보증부 대출 희망 시 실행이 가능한지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"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" 4. 교육이수 실적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6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B : 4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C : 24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D : 12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</td> </tr> <tr> <td>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60시간 이상	B : 40시간 이상	C : 24시간 이상	D : 12시간 이상	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"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" 4. 교육이수 실적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6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B : 4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C : 3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D : 20시간 이상</td> </tr> <tr> <td>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</td> </tr> <tr> <td>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60시간 이상	B : 40시간 이상	C : 30시간 이상	D : 20시간 이상	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○ 전문임업인기반조성자금 교육이수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기준 정비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
A : 6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B : 4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C : 24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D : 12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
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
A : 6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B : 4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C : 3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D : 20시간 이상																	
* 산림청, 농림수산물부, 농촌진흥청,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또는 지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
* 신청일 기준 3년 내 실적만 인정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"목재이용활성화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" 3. 사업규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8,000㎡ 이상(10점)</td> </tr> <tr> <td>B : 5,000㎡ 이상(8점)</td> </tr> <tr> <td>C : 3,000㎡ 이상(6점)</td> </tr> <tr> <td>D : 3,000㎡ 미만(4점)</td> </tr> <tr> <td>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8,000㎡ 이상(10점)	B : 5,000㎡ 이상(8점)	C : 3,000㎡ 이상(6점)	D : 3,000㎡ 미만(4점)	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<p>[참고 8-2] 산림사업종합자금 심사 기준(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제외) "목재이용활성화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" 3. 사업규모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등급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6,000㎡ 이상(10점)</td> </tr> <tr> <td>B : 5,000㎡ 이상(8점)</td> </tr> <tr> <td>C : 3,000㎡ 이상(6점)</td> </tr> <tr> <td>D : 3,000㎡ 미만(4점)</td> </tr> <tr> <td>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등급기준	A : 6,000㎡ 이상(10점)	B : 5,000㎡ 이상(8점)	C : 3,000㎡ 이상(6점)	D : 3,000㎡ 미만(4점)	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○ 심사기준 완화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
A : 8,000㎡ 이상(10점)																	
B : 5,000㎡ 이상(8점)																	
C : 3,000㎡ 이상(6점)																	
D : 3,000㎡ 미만(4점)																	
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																
등급기준																	
A : 6,000㎡ 이상(10점)																	
B : 5,000㎡ 이상(8점)																	
C : 3,000㎡ 이상(6점)																	
D : 3,000㎡ 미만(4점)																	
* 원자재 출납대장 또는 (세금) 계산서로 확인																	
	<p>[참고 16] 조경수 지원 수종</p>	<p>[참고 16] 조경수 지원 수종</p>	○ 2025년 임업관측월보(조경수) 반영														